##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(약칭: 퇴직급여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22. 7. 12.] [고용노동부령 제359호, 2022. 7. 12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 (퇴직연금복지과) 044-202-7556,7557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) ①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 또는 제 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(법 제 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(확정기여형, 혼합형)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7. 26.>
  - 1. 퇴직연금규약
  - 2.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(이하 "근로자대표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았거나 의견 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
 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7. 26.>
  - 1.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작성한 퇴직연금규약
  - 2.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(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로 한정한다)
  - 3.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(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 다)
- 제3조(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) ①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2. 5. 18.>
  - 1. 표준부담금: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
  - 2. 보충부담금: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
  - 3. 특별부담금: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「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
  -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, 예상임금상승률, 예상퇴직률, 예상사망률 등(이하 "기초율"이라 한다)을 기초로 산정한다.
  -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,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.
  -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(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)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.
  -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해당 사업이 성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. 다만, 합병・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화재 등으로 경험통계 자료를 분실한 경우
- 3. 경험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
-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.
-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

**제4조** 삭제 <2022. 5. 18.>

- 제4조의2(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) 영 제5조제1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20, 12, 29,, 2022, 5, 18,>
  - 1. 삭제 < 2022. 5. 18.>
  - 2.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: 100분의 90
  - 3. 2022년 1월 1일 이후: 100분의 100

[본조신설 2017. 12. 18.] [제목개정 2020. 12. 29.]

- 제5조(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)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"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  -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.
- **제6조(적립금의 산정)**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
  - 1.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의 시가(時價) 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할 것.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이 될 때에는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산정할 것
  -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·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것
- **제6조의2(지원금의 환수)**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폐업을 말한다.

[본조신설 2022. 5. 18.]

- **제7조(운용현황의 통지)**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- 1. 우편 발송
  - 2. 서면 교부
  - 3.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
  -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서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합의한 방 법
  -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.
- ④ 퇴직연금사업자(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.<개정 2019. 7. 26.>
- 1.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
- 2.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
- **제8조(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 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, 심의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 - 1.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
  - 2.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  - 3.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
    - 가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노동, 경제,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
    - 나. 노동, 경제,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
    - 다. 노동, 경제,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
    - 라.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퇴직연금, 자산운용, 금융상품 평가 또는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
  -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 지 통보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7. 12.]

[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<2022. 7. 12.>]

- **제8조의2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심의・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이 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
  - 2.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4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나.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원과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자문,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
- 4.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7. 12.]

- **제8조의3(위원의 해촉)**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 - 5.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

[본조신설 2022. 7. 12.]

- **제8조의4(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)**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.
  -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.
  - 1. 법 제21조의3제1항제1호의 사항
  - 2.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

[본조신설 2022. 7. 12.]

**제9조(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)**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[제8조에서 이동,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<2022. 7. 12.>]

제10조(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)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.

<개정 2015. 3. 23.>

- 1.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: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
- 2.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: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
-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"이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분증권(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,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・투자합자회사・투자합자조합・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<개정 2015. 3. 23., 2019. 12.

18.>

## [제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<2022. 7. 12.>]

- **제11조(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)**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"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  - 1.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2.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, 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서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3.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 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- 4. 「공인노무사법」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
  -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다 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[전문개정 2022. 5. 18.]

[제10조에서 이동,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<2022. 7. 12.>]

- 제12조(취급실적의 제출)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.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·대표자·주소·재무상황 및 경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2.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대상사업,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3. 적립금 운용사항.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4. 급여 지급사항. 이 경우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5.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,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19.>
  - 1.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: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
  - 2.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: 사용자,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
  -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개정 2018. 12. 19.>

[제11조에서 이동,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<2022. 7. 12.>]

- 제13조(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)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(확정기여형, 혼합형)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(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확인해야 하며,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  - 1. 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
  - 2.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

[전문개정 2019. 7. 26.]

[제12조에서 이동,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<2022. 7. 12.>]

**제14조(규제의 재검토)**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7. 12.>

[전문개정 2022. 1. 28.]

[제13조에서 이동 <2022. 7. 12.>]